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 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원의 육안 확인만으로 재검사가 가능함에도 검사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진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자동차 소유자가 온라인으로 증빙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자동차 재검사 기간을 10일 이내로 규정하는데 있어 공휴일 등을 기간에 포함하는 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재검사 기간을 산정하는데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재검사 기간을 확대하고자 함

재검사 시에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자동차의 앞·뒷면의 검사 실시 장면을 모두 촬영하도록 하고 있어 재검사 대상 위치에 따라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게 하여 사진촬영으로 인해 불필요한 검사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고자 함.

검사기간이 경과한 중고차를 매수한 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검사를 미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을 이전등록 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에 매수자에게 자동차 검사 미 실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LPG 자동차의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을 방지하고, 후부반사판을

미설치한 중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로 인해 야간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용기의 부식과 7.5톤 이상의 화물차와 특수차의 후부반사판 설치여부를 자동차 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자동차 운행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검사 실익이 낮은 일부 검사 항목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육안 식별이 곤란하고, 검사 필요성이 낮은 전기자동차의 모터(구동전동기 형식)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변속기 오일은 자동변속기의 기술개발로 인해 오염 우려가 낮고, 차량 제조사별로 변속기 오일의 규격이 달라서 검사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변속기 오일 오염도의 검사 항목을 진단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차에 대해 인터넷 광고 게재를 하는 경우 현행 광고게재 항목이 불명확하여 매매알선자가 광고하는 경우에도 직접 매도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고 매매알선수수료 등 예측치 못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매매종사원이 영업기간 중 패용하도록 하는 매매사원증을 인터넷 광고시에도 게재하고, 소비자가 매매종사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함.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서식에 소유자 정보 표시란은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기입해야하나, 신청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자동차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서 등록번호판 재발급을 신청하러온 위임자의 성명을 오기

입하는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소유자 정보 표시란을 소유자로 변경하고자 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륜차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이륜차 소유자가 불필요하게 신고관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입신고 또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륜차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가 생략됨을 안내하는 내용을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서식에 추가하고자 함.

수입 이륜차의 수입신고필증이 ‘관세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입 이륜차의 소유자가 사용신고할 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구비서류에서 수입신고필증을 제외하도록 하여 사용신고 절차상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가 GPS를 통해 요금을 산정하는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인 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절차,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일부 재검사 항목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재검사 기간을 산정할 때 공휴일 등을 제외(안 제81조)

나. 재검사 시에 앞면 또는 뒷면을 선택하여 검사 실시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0조의3제2항)

- 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경우, 지자체가 소유자에게  
검사 미 실시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77조의2)
- 라. 검사항목에 LGP용기의 심한 부식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  
부반사판과 반사지 미설치 여부를 추가하고, 구동전동기 형식은 검사  
항목에서 제외(안 제80조제2항)
- 마.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매도 또는 매매알선 여부, 매매사  
원증,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항  
목에 추가(안 제120조제4항)
- 바. 등록번호재발급등 신청서에 소유자 정보 표시란에 신청인을 소  
유자로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 사. 전입신고, 성명·주민등록번호 정정신고 시에 이륜차 사용본거지  
등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안 별지 제64호서식)
- 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입 이륜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 내  
용을 확인 가능한 경우 수입 이륜차의 사용신고 시에 수입신고필  
증을 구비서류에서 제외(안 제99조제2항, 별지 제73호서식)
- 자.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검정기관 지정 기준을 마련(안 제96조의2, 별표 21의2)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7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가목 중 “원동기형식”을 “원동기형식(구동전동기 형식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불인탈락”을 “불인탈락, LPG용기의 심한 부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의 뒷면에 설치된

후부반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제80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의 위치에 따라 앞면 또는 뒷면 전체의 실시장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0조제2항 항목 중 일부 항목의 재검사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항목, 신청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일이내”를 각각 “10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 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부적합 사항을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6조의 제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을 “(전기식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택시미터검정설비”를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로 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검정기관의 권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 21의2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8조 본문 중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를 “전기식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 또는 제62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으로 한다.

제98조의3제1항 중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 제6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9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62호의4서식”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11조의2 중 “별표 21의2”를 “별표 21의3”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호카목 중 “별표 21의3”을 “별표 21의4”로 한다.

제117조의2제2항 중 “별표 21의4”를 “별표 21의5”로 한다.

제120조제4항제5호 중 “매매업자, 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및”을 “매매업자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을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8조의4”를 “법 제58조의5”로 한다.

## 6.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각 목의 사항

가. 직접매도 :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 타인 소유의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 7.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앞면 사진 및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의 인터넷 주소 등 매매종사원의 정보확인이 가능한 사항

제136조제1항제4호 중 “영 제14조의5”를 “영 제14조의6”으로 한다.

제154조의2제1항 중 “영 제14조의5제3호”를 “영 제14조의6제3호”로 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택시미터주행검사기”를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택시미터주행검사기”를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로 한다.

별표 제15의2 중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 별표 18 제1호 중 “택시미터”를 “전기식 택시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택시미터주행검사기”를 “전기식 택시미터주행검사기”로 한다.

별표 21의 제목 중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으로 한다.

별표 21의2 및 별표 21의3 및 별표 21의4를 각각 별표 21의3 및 별표 21의4 및 별표 21의5로 하고, 별표 2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소유자 “신청인”을 각각 “소유자”로 한다.

별지 제48호의3서식 중 “오염도”를 “상태(진단가능한 경우에 한함)”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중 “시행규칙 제87조의2”를 “시행규칙 제88조”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제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중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2호서식의 제목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를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2호의2서식 및 별지 제6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62호의3서식 및 별지 제62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6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서식의 기호(○)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한다.

별지 제97호의3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6”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 기간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의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권한기준(제96조의2제2항관련)

1. 검정설비 기준

| 검정종류    | 검정항목           | 검정시스템명                   | 검정시스템규격                                                                                                                         | 수량    |
|---------|----------------|--------------------------|---------------------------------------------------------------------------------------------------------------------------------|-------|
| 제작·수리검정 | 데이터 송·수신       | 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 것                                                                                                          | 1식 이상 |
|         |                | 통신규약 검증 시스템              |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5의2에 따른 애플미터 관련 표준통신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송수신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운임산정           | 이상좌표 검출 및 실 운행 여부 검증 시스템 | ·비정상적인 좌표를 포함한 운임산정 내역을 검출할 수 있을 것<br>·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이외의 데이터와 융합하여 실제 지정 택시에서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 운임 기준준수 및 산정내역 분석 시스템    |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사용검정    | 데이터 송·수신       | 운행 데이터 수집 시스템            |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처리가 가능할 것<br>·전국 택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 통신규약 검증 시스템              | ·제작·수리검정과 동일                                                                                                                    | 1식 이상 |
|         | 운임산정           | 이상좌표 검출 및 실 운행 여부 검증 시스템 | ·제작·수리검정과 동일                                                                                                                    | 1식 이상 |
|         |                | 운임 기준준수 및 산정내역 분석 시스템    | ·운임 기준준수 및 허용차 검사를 할 수 있을 것<br>·최근 영업데이터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         | 운전자 및 차량 정보 입력 | 운전자 및 차량 검증 시스템          | ·택시운전자자격증번호, 자동차등록번호를 받아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br>·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의 정보를 이용할 것<br>·유효성 검증을 받지 않고 시작된 영업을 검출할 수 있을 것 | 1식 이상 |

2. 검정기관 권한기준(사용검정에만 해당한다)

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행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등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권한

나. 운수종사자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

다. 자동차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서

[ ] 제작 [ ] 수리 [ ] 사용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신청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검정기관 | 전화번호    |      |               |     |
|      | 소재지     |      |               |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br>(대표자)<br>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br>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1부<br>3. 검정기관의 권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수수료     |
| 국토교통부장관,<br>특별시장·광역<br>시장·도지사·<br>특별자치도지사<br>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0,000원 |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서

[ ] 제작 [ ] 수리 [ ] 사용

1. 명칭(업종):
2. 성명(대표자):
3.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4. 검정기관 소재지:

위 사람을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직인

##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      | 주소       |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검정기관 소재지 |      |      |     |
|      | 폐지사유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유의사항

-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에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접수 번호 | 접수 일시                             | 발급 일시          | 처리 기간 즉시 |
|-------|-----------------------------------|----------------|----------|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
| 이륜자동차 |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          |
|       |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       |                                                                                                                                                                                                                   |     |
|-------|-------------------------------------------------------------------------------------------------------------------------------------------------------------------------------------------------------------------|-----|
| 첨부 서류 |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 수수료 |
|       |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br>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br>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br>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없음  |

### 유의 사항

-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8호)
-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필증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제 호

## 이 룬 자 동 차 사 용 신 고 필 증

년 월 일

읍장

면장 인

동장

33331-06261일

74mm×105mm

96.10.4 승인

(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제2쪽)

### 사용자 유의사항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주소변경의 경우는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이 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처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
  -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이륜자동차
  -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 ※ 전기이륜자동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신청기간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입니다.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재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신고가 된 날부터 62일 이내입니다.

- 이륜자동차를 튜닝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명서를 제출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 : 읍·면·동장은 본 증명서를 투명비닐에 넣어 교부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br>(생략)<br><br><u>&lt;신설&gt;</u>                                                                                                                                           |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br>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br>② 제7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그 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로 통지해야 한다. |
|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생략)<br>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20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 제80조(검사의 실시등) ① (현행과 같음)<br>②-----<br>-----<br>-----<br>-----<br>-----<br>-----<br>-----<br>-----<br>-----<br>-----<br>-----                                                              |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  
고할 수 있다.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  
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  
른 경우(자형의 위조·변  
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  
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다. (생략)

2. ~ 4. (생략)

5. 연료장치 중 조속기(연료 분  
사량 조정기) 봉인탈락 및 연  
료의 누출

6. ~ 11. (생략)

12. 등화장치

가.·나. (생략)

<신설>

다. (생략)

13. ~ 22. (생략)

-----  
-----  
-----.

1. -----

가. ----- 원동  
기형식(구동전동기 형식은  
제외한다)-----

나.·다. (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5. -----  
----- 봉인탈락, LPG용  
기의 심한 부식 -----

6. ~ 11. (현행과 같음)

1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의 뒷면에 설치된 후부반  
사판 또는 후부반사지 미  
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라. (현행 다목과 같음)

13. ~ 2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 (생 략)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앞면 및 뒷면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앞면은 검사진로로 진입할 때에, 뒷면은 검사진로로부터 진출할 때에 각각 촬영해야 한다.

<신 설>

④ (생 략)

제81조(재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 제1항에 따른 재검사의 경우에는 재검사 대상의 위치에 따라 앞면 또는 뒷면 전체의 실시장면을 선택하여 촬영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과 같음)

제81조(재검사) ①-----  
-----  
-----  
-----

(재검사기간 내에 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 내에 해당 자동차를 검사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80조제3항에 따른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와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1. 신규검사·튜닝검사 및 임시검사 : 검사부적합 통지서 또는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2. 정기검사 : 제7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간 만료후 10일이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  
-----  
-----  
-----  
-----  
-----  
-----  
-----  
-----.

1. -----  
-----  
-----  
----- 10일(「공  
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

2. -----  
-----  
-----  
-----  
-----  
----- 10일(「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가.·나. (생략)

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

가.·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등록번호판의 망실,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훼손에 관한 사항

2. 제80조제2항제12호가목(전조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부적합 사항을 정비한 부분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함께 보이는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진만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6조(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생략)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정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별표 21의 택시미터검정설비 및 검정요원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신설>

로 적합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진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부적합한 항목에 대하여 다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96조(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  
-----  
-----  
-----  
--.

1. (현행과 같음)

2. ----- 전기식 택시미터검정설비 -----  
--

제96조의2(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의 명세서

3. 검정기관의 권한기준을 증명하는 서류(사용검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별표 21의2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설비 및 검정기관

|                                                                                                                                                                                                                                                                                                                                                                   |                                                                                                                                                                                                                                                                                                                             |
|-------------------------------------------------------------------------------------------------------------------------------------------------------------------------------------------------------------------------------------------------------------------------------------------------------------------------------------------------------------------|-----------------------------------------------------------------------------------------------------------------------------------------------------------------------------------------------------------------------------------------------------------------------------------------------------------------------------|
|                                                                                                                                                                                                                                                                                                                                                                   | <p><u>권한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검정 업무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p>                                                                                                                                                                                                                          |
| <p>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예정일 3월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u>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u>(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u>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u>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p> <p>①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가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사실을 통보하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전자</p> | <p>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p> <p>-----</p> <p>-----</p> <p>-----</p> <p>----- <u>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 또는 제62호의2서식의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u>-----.</p> <p>----- <u>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u>-----</p> <p>-----.</p> <p>제98조의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p> <p>① -----</p> <p>-----</p> <p>-----</p> <p>-----</p> <p>-----</p> <p>-----</p> |

문서로 하자재발 통보서를 작성  
·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별지 제62호의2서식에 따른 하  
자재발 통보서를 작성하여 자동  
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생 략)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① (생 략)

② 법 제47조의4제1항제2호에  
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  
을 수락한 경우”란 하자차량소  
유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자에게 교환·환불중재 규정  
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  
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에 서  
명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한 경우를 말한다.

1. 2. (생 략)

③ 하자차량소유자가 법 제47조  
의4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환  
불을 위한 중재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62호의3서식에 따른 자

-----  
-----  
별지 제62호의3서식-----  
-----  
-----  
--.

②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별지 제62호의4서식-----  
-----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  
-----  
-----  
별지 제62호의4서식-----

동차 교환·환불중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

-----  
-----  
-----  
-----  
-----.

1. ~ 4. (현행과 같음)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 -----

----- 별표 21의3-----.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

-----  
-----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생략)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 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차. (생략)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 내용 구분

3. (생략)

②·③ (생략)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58조제3항에서 “자동차의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별표 21의4-----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21의5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자동차 매매업자, 매매사업조  
합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에 관한 사항

6. 매매종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

<신 설>

⑤ 법 제5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에서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  
·산정 업무를 하려는 장소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⑥·⑦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5. ----- 매매업자 및 자동차매  
매사업조합의 상호, 주소, ---  
-----

6. 광고를 게재한 자동차매매업  
자의 매매유형에 관한 사항  
가. 직접매도 : 자동차매매업자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를 직접  
매도하는 경우

나. 매매알선 : 타인 소유의 자  
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7. 매매종사원의 매매사원증 앞  
면 사진 및 자동차매매사업조  
합연합회의 인터넷 주소 등  
매매종사원의 정보확인이 가  
능한 사항

⑤ 법 제58조의5 -----  
-----  
-----  
-----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
|---------------------------------------------------------------------------------------------------------------------------------------------------------------------------------------------------------------------------------------------------------------------------------------------------------------------------------------------------------------------------|----------------------------------------------------------------------------------------------------------------------------------------------------------------------------------------------------------------------------------------------------------------------------------------------------------------------------------------------------|
| <p>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br/>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주행거리계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 단서 및 <u>영 제14조의5</u>에 따른 주행거리계의 변경 사유 및 증명 자료의 확인</p> <p>② (생략)</p> <p>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u>영 제14조의5제3호</u>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 <p>제136조(정비책임자의 직무등) ①<br/> -----<br/> -----<br/>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br/> -----<br/> ----- <u>영 제14조의6</u> -----<br/> -----<br/>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54조의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① <u>영 제14조의6제3호</u><br/> -----<br/> -----<br/> -----<br/> -----<br/> -----<br/> -----<br/> -----<br/> ---</p> <p>② (현행과 같음)</p> |
|---------------------------------------------------------------------------------------------------------------------------------------------------------------------------------------------------------------------------------------------------------------------------------------------------------------------------------------------------------------------------|----------------------------------------------------------------------------------------------------------------------------------------------------------------------------------------------------------------------------------------------------------------------------------------------------------------------------------------------------|